

## ■ 최신 법령 ■

## 근로기준법 일부개정

### 1. 개정 목적

육아 친화적인 환경과 근속기간 2년 미만 근로자의 휴가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차 유급휴가일수 산정에 관한 규정을 개선하고, 벌금형 수준을 징역형에 비례하여 조정하여 벌금액이 상향조정되었습니다.

### 2. 주요 내용

- 가.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한 유급휴가를 다음해 유급휴가에서 빼는 규정을 삭제하여 1년차에 최대 11일, 2년차에 15일의 유급휴가를 각각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(제60조제3항 삭제).
- 나. 연차 유급휴가일수 산정 시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도록 명시하였습니다(제60조제6항제3호 신설).
- 다.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천만 원으로 조정하여 벌금액이 상향되었습니다(제107조·제109조 및 제110조).

### 3. 다운로드 : [근로기준법 일부개정\(2018. 5. 29. 시행\)](#)